

* 별첨

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대상 기준 및 운영 기준

1. 참여대상 기준 : 『의료급여법』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2) 「재해구호법」에 의한 이재민
- 3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
- 4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- 5)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
- 6)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) 및 그 가족으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- 7) 「5.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8)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 - ①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
 - ② 『사회복지사업법』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청소년
 - ③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청소년
 - ④ 그 밖에 사회적배려대상으로서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, 중식제공자 등 교육청(학교장)이 인정하는 저소득학생
 - ⑤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(기재된 자녀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) : 50%감면(이미 증서 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)

2. 운영 기준

- 1) 출석률 80%(현장학습, 경조사 등의 합당한 사유 제외)에 미치지 못할 시 수강을 제한한다.
- 2) 불량한 행동,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교사의 판단 하에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고,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시 수강을 제한한다.
- 3) 셔틀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 시 자가 등.하원을 원칙으로 한다.